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93
----------	------

발의연월일 : 2020. 10. 13.

발 의 자 : 김성원 · 김정재 · 이주환  
이종성 · 이 영 · 성일종  
임이자 · 최승재 · 윤창현  
엄태영 · 권명호 · 지성호  
이명수 · 이종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폐쇄·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건에서 2층 여성용 목욕탕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됨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대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이에 피난시설 등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화재발생 시 대피통로의 확보 등 화재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호의2 신설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제5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생 략) <u>&lt;신 설&gt;</u></p> <p>2. ~ 10. (생 략)</p> <p>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 략)</p> <p>2. <u>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u></p> <p>3.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49조(벌칙) ----- ----- ----- -----.</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u>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u></p> <p>2. ~ 10. (현행과 같음)</p> <p>제53조(과태료)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